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에 제출된 남북공동 기소장과 판결 요약

남북 검사단은 히로히토 외에 7명의 개인과 일본정부를 피고로 하여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개인책임과 국가책임을 물었다. 또한 국제검사단은 히로히토 외 다수와 일본정부를 반인도적 범죄로 기소하였다.

남북공동 기소장

남북 공동 검사단은 1904년이래 한반도는 국제법상 일본에 군사점령된 상태에 있었으며 일본정부와 피고인들이 당시 조선여성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강제로 끌어내어 일본군위안소에 보내어 성노예상태에 빠뜨리고 강간, 상해, 노예화, 살인, 학살, 박해, 기타 비인간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은 국제법상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하며 이들은 이에 따라 개인형사책임과 국가책임을 진다고 기소하였다.

국제법정의 판결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기초하여 검사단이 피고 히로히토 천황에 대한 죄책을 입증하였으며 그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서 강간과 성노예에 대하여 유죄임을 판단하였다. 일본정부 역시 위안소체제의 설치와 유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진다고 결정하였다. 다른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에 관하여는 최종판결에서 밝힐 예정이다.

일본 천황의 책임

일본 천황은 1945년에 이미 강간과 노예제를 국제법상 추악한 범죄로 인정하고 있는 당시의 법에 비추어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기소되었어야 하지만 전후 책임이 묻어지지 않았다. ‘위안부’를 전쟁물자의 일부로 끌고 간 것은 심각한 인종적 태도에 바탕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로 가난하고 일본인이 아닌 여성들을 겨냥하여 전대미문의 규모로 자행된 성노예의 제도화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일본천황 히로히토는 육해군의 통수권자로서 그의 부하들이 국제법에 따르고 성폭력에 가담하는 것을 제지할 책임과 권한을 가졌고 실제 전쟁수행에 대한 궁극적인 결정권을 행사하였으며 자신의 군대가 강간과 성폭행을 포함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수사·처벌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의식적으로 자발적이지 않은 위안소체제를 통하여 강간과 성노예를 대규모로 자행하고 은폐하는 것을 승인하였거나 부주의하게 허용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일본정부의 국가책임

일본정부의 국가책임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일본은 일본의 영토 안팎에서의 일본정부기관과 고용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1907년 육전의 법과 관습에 관한 헤이그협약, 1921년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금지협약, 1930년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금지협약을 위반하였으며 1907년 헤이그협약과 1926년 노예협약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는 국제관습법 규범을 위반하였다고 하였다. 일본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극동 국제군사재판소의 판결을 승인한 사실이 언급되었다.

재판부는 특히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위안부’들을 고국으로 송환하지 않은 것은 헤이그법규의 직접적인 위반이라고 하였다. 제2차대전 후 일본이 체결한 평화조약이나 한일 기본관계조약과 청구권협정은 국가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다른 국가의 책임을 조약에 의해 면책시킬 수 없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재판부는 또한 이러한 조약들의 밑바닥에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작용하였으며 일본군성노예제와 강간 문제는 당시 협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무력충돌시 여성에게 자행된 범죄에 대한 불처벌의 문화를 만연케 하였다고 하였다.

재판부는 특히 생존여성들의 증언에서 일본정부가 근본적인 법적 책임을 수행하지 않은 결과로 지속적으로 재차 고통이 가해지고 비밀스러움과 수치심을 강화시키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하고 일본정부는 배상이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하여야 한다는 국제법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하였다. 국제불법행위에 대해 구제하여야 한다는 국제법의 오래된 원칙에 따라 일본정부는 금전배상, 원상회복, 사회복귀(rehabilitation), 만족(또는 진사(陳謝)), 재발방지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재판부는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이러한 불법행위를 인정할 의무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사죄는 불법행위의 완전한 인정과 법적 책임의 명백한 인정에 바탕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재판부는 일본의 공식입장이 처음엔 범죄를 입증하는 문서의 인멸에서 침묵으로, 군의 관여사실의 완강한 인정거부에서 국제의무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적인 사죄로 바뀌어갔음을 살펴보고 일본이 자신의 불법행위를 완전히 인정하기를 고의적으로 거절하는 상태는 생존여성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평화롭게 살 가능성을 박탈하며 수치심과 침묵을 만연케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일본이 불법행위를 인정할 의무를 지며 그러한 만행이 앞으로의 세대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공적인 역사로 기록할 필요를 인정하고 현재 일본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음을 통박하였다.

재판부는 또한 일본정부가 피해여성들과 협의하여 “사회의 시각에서” 이들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최초의 폭력과 노예화와 지속적인 침해행위에서 야기되는 모든 경제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물질,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정하였다. 국제법상 배상은 정부차원에서 행